

결재	계	팀장	이사	부사장	대표이사

(근) 보증서

대부회사는 채무자·보증인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대부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대보증의 위험성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최대 근보증 한도액까지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기간은 최대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상환되는 시점까지 보증 책임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보증유효기간 선택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갚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준하게 되어 대출거절, 한도축소 등 각종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 보증채무가 상속되어 자녀 등 상속인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위험성에 대해 읽고 이해하였음. 연대보증인 장 경 미 (인)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보증서 끝부분)은 보증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애플핀테크대부 앞

연대보증인 장 경 미 (인)

주 소 _____

연대보증인(이하"보증인"이라 합니다)은 채무자가 (주)애플핀테크대부(이하"대부회사"라 합니다)에 대한 제1조에 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 부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대부회사에 제출한 다음의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논을 갚지 못한 경우 보증인이 책임지는 채무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아래의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무자 : 성명 태하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경미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26, 4층 405호(연희동)

이 경우 보증약정일 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보증의 유효기간을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보증의 유효기간은 통지 도달일 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 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보증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증인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보증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 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보증의 유효기간을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보증의 유효기간은 통지 도달일 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 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보증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제2조 (다른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보증인이 새무사의 내부회사에 대한 같은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약정에 의한 보증 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내부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같은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3조 (담보 등의 변경 · 해지 · 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내부회사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조 (보증인의 교체요구)

보증인은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신용 등이 양호한 자로 내부회사에 보증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약사항)

보증인:  장 경 이  (인)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표를 내부회사로부터 제시받아 신용상태를 충분히 검토, 확인하였습니다.

※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1. 수령함 2,3. 들었음)

1. 대부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수령함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들었음
3.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들었음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	---	---	-------	-------	-----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대보증이란※

대부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으며 또한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용 어 해 설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 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먼저 채무자에게 요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써 보통 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 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며 먼저 주 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써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분별의 이익: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특정채무보증은 채무자가 대부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 취급 또는 다른 대부로 전환된 때에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보증은 채무자와 대부회사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게 되는 것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근보증 특정된 거래계약(예: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보증합니다. 그러나 재 취급 또는 다른 대부로 전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포괄근보증 채무자가 대부회사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대부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보증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보증을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설명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음. 연대보증인

장영미

